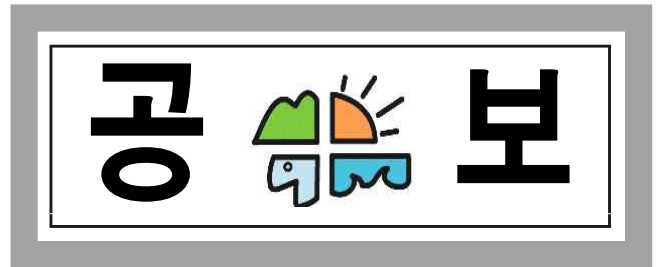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35호 2016년 12월 1일(수)

공 고

-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속초시 공고 제2016 - 817호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본 조례는 속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구성 요건 8개 항목을 5개 항목으로 변경(안 제2조)
-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 삭제(안 제4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2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여성가족과(드림스타트담당)
- 연락처 : 033-639-2687 (FAX 033-639-273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담당(033-639-26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속초시 소속 공무원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 중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속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 ----- 이내의 위원으로 --.
② 위원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 시장----- ----- -----.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속초시의회 의원	1. 속초시 소속 공무원
2. 속초 양양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 5.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 6.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7.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생략)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5. (생략)
- 6.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 8. (생략)

② (생략)

제4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 임기) -----
-----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